

**회원명 단제출**

나날히 발전해가는 대한양계협회는 보다 유기적인 정부와의 유대관계를 가져 양계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각 회원의 최근 현황을 다음 양식에 의거 요청하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업   장		업종	구 분		입 회 년월일	전화 번호
			소재지	상 호		사육규모	동가부업		
		①			②	③	④		

- 주 ①...거주지주소 기입  
 ②...부화, 채란, 육계, 감병, 대학교수, 연구관등 업종기입  
 ③ ④...사육수수를 기입하되 1,000 수미만 사육자일지라도 농지세를 납부치 아니한 자는 농가부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 할 것.  
 ※ 특히, 미보고한 각지부, 분회에서는 단체 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불량추 생산금지 경고  
 무허가부화-50만원이하  
 미등록종계-20만원이하**

정부는 지난 76년12월22일자로 건전한 양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화업의 허가제와 종계업의 등록제를 고시했고, 다시 77년 2월10일자로 농수산부로부터 불량추생산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시달받은 대한양계협회에서는 1차로 고발된 불량추생산업자에게 즉각 불량추생산을 금지할 것을 경고했다.

개정된 현행법은 부화를 허가없이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 종계업을 등록치 않고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제 2 회 유통개선위원회 개최**

양계산물 유통의 원활한 개선을 도모

양계산물 유통의 원활한 개선을 도모키 위한 제 2 회 유통개선위원회가 4월11일 오후 3시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오세정 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심지에서의 생계유통은 점진적으로 도계유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것”을 강조했으며 이어 노영환 사무국장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설명이 있는뒤 유통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결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는 생계상인에게 현시설을 보수하여 공해가 없도록 중용한다.
2. 각 단지별로 도계장을 많이 만들어 출것과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를통해 소비자를 계몽해 출것을 정부에 진의한다.
3. 육계가격이 기복이 없도록 정부에 비축자금을 마련하여 육계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한다.

**양계협회 편집회의 개최**

본 협회에서 발간되고있는 간행물의 질적향상과 새로운 방향 정립을 도모코져 매월 열리고 있는 편집회의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편집위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본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간양계 3, 4月号 내용에 관한 세부적 검토및 5月号의 편집계획 검토, 그동안 7호 까지 발간된 양계속보의 내용 검토 및 시급한 방향선정 등이 2시간에 걸쳐 논의되었다.

**제 12 회 산란계경제능력검정실시**

대한양계협회 닭경제능력검정소(소장 : 조성남, 김포소재)는 지난 4월 1일 입추를 하여 제12회 산란계 경제능력검정을 개시한 이후 4월 9일 검정을 위한 이대작업을 끝냈다.

특히 제12회 경제능력은 새로히 시설된 육추사와 보강된 인원으로 훌륭한 검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 9 회 「육용계」경제능력검정 신청 접수**

대한양계협회에서는 그동안 검정소 시설보완

등 닭경제능력검정에 정확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바 금년부터는 년 2회에 걸쳐 육용계 경제능력검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9 회 육용계경제능력검정 신청을 받으니 많은 양계가의 신청을 바란다.

문의처: 대한양계협회 지도조사부 (22) 3571

○ 지부소식

▲ **경북지부** (지부장 · 이상윤)에서는 4월14일 오후 1시 대구 청소년회관에서 대구 지방국세청 개인세과장을 모시고 축산업 전반에 관한 새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전북지부** (지부장 · 신흥중)에서는 지난 4월 9일 오후 2시 전주세무서 회의실에서 전주

세무소 소득세제장을 모시고 「축산업에 대한 세부강좌」를 실시했다.

▲ **전남지부** (지부장 이종춘)에서는 3월24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의 전남지부 양계업자에 대한 자료보고 지시에 따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종춘지부장 및 안명수총무 외 9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4월중 양계업자 세무확정신고통보
- ② 사업개업일자 (사업자 번호에 의한 날자)
- ③ 1976년 소득액 외형 총액
- ④ 1976년 사육수수 (초생, 중추, 대추, 성계구분)
- ⑤ 허위보고 과소보고 중지

축산진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개선에 관한

건의서 제출

축산단체연합회는 4월10일 대한양계협회, 한 국내농협회, 한국기업목장협회, 한국양돈 협회, 대한양토협회의 이름으로 농수산부에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

유신과업수행과 아울러 경제발전을 위하여 주력하시는 당국의노고에 대하여 심기한 치하를 드리오며 더욱이 축산진흥을 위하여 축산업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등의 특별 배려를 하여 주셔서 축산업발전의 기틀이 안정화되어감에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하오나 금반 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을 앞두고 법제정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이 있어서 모처럼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축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처지에 있으므로 축산업계의 실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고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드리오니 실정을 검토하셔서 특별하신 조치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 현황은

(1) 축산식품은 중요한 食料資源으로서 國民소득의 증가에 따라 축산식품의 需要도 점차 증가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식량원의 확대조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세세면에 있어서는

① 축산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 4조의 8에 畜産業을 중요산업으로 규정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조치를 하였고

② 축산물은 국민생활의 기초식료품인 전지에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 1항 제 1호전반에 「加工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공하는 農産物·畜産物·수산물·林産物을 포함한다)」으로서 면세품으로 규정되었으며 또한 동조제 1항 1호후단에 「우리나라 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農産物·畜産物·수산물·林産物」도 면세토록되어 國內産畜産物은 다른 農産物·수산물·林産物 과 같이 모두 면세하도록 되었습니다.